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6
----------	------

2020년 3월 3일  
교육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2월 5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
  -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 
(2021년 3월 3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강연홍 교육정책국장)

#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‘유치원규칙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한 반면 ‘유치원규정’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-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전자투표를”을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로 수정(안 제4조제1항)
-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,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 가능 조항 신설(안 제4조제6항)
-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유치원운영위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 연장 가능 조항 신설 (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)
-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“유치원규칙”을 “유치원규정”으로 변경함으로써 「유아교육법」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이동 반영
-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11조제2항)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36호로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교직원 전체회의,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을 때의 위원의 선출방식 및 선출기한 조정, 임기개시일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51)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2)에 따른 재난이나 불

##### 1)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

- 제22조의5(위원의 선출 등) ①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-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.
- ⑦ 국립·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,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 1) 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

-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‘전자투표’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‘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’로 구체화하였으며,

같은 조 제6항은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부모 전체(대표)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#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○ 이는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향후 다양한 감염병에 의한 재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,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유치원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## 2)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(위원의 임기)

○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출기한이 조정된 경우 차후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개시일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6항과 연동되는 규정입니다.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선출기한의 조정으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선출기한의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#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전자투표를”을 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4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임기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중 “영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2조의5”를 “영 제22조의6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치원규칙”을 “유치원규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유치원장”을 “원장”으로, “영 제22조의10”을 “영 제22조의10제1항”으로 하며,

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원장은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영 제22조의7제1항”을 “영 제22조의4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영 제22조의7제2항”을 “영 제22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